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감사개요

- 기 간 :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 예정)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감사위원 : 6명
 - 위원장 : 정종기 의원
 - 부위원장 : 조선제 의원
- 감사항목 : 77개 항목
- 감사대상 : 7개 실·과·소, 읍·면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4年度 行政事務 監査計劃

집행기관에서 시행한 군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의회가 시정·건의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1. 監査目的

-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 군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의정활동과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수집
- 군정의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 시정요구하여 군정이 능률적 생산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함

2. 監査方向

- 발전적인 군정운영 분야의 발굴 ⇒ 격려 및 계승발전
- 미진한 업무분야에 대한 문제점 도출 ⇒ 사유규명 및 해결책 강구
- 전체군민의 이익과 관련부분 중점감사 ⇒ 미래지향적 정책감사 정착
- 군민이 궁금해하는 분야 집중규명 ⇒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3. 監査施行

가. 기 간 : 2004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 예정)

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다. 감사주체 :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 위원장 : 정종기 의원

○ 부위원장 : 조선제 의원

○ 위 원 : 박점용, 정연명, 이수정, 정화석 의원

라. 사무보조

- 전문위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 이명규
- 사무보조 및 속기 : 김종두, 정현정

마. 감사대상 기관 : 거창군

- 대상실과소 : 농정과, 경제과, 환경녹지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거창읍 외 11개면

※ 필요시 위탁기관 및 보조금 지급 단체도 감사

바. 감사범위(기준) : 2003년 ~ 2004년까지 처리한 군정 행정 사무 전반 (고유사무 + 위임사무)

단, 금년도 처리사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이전 처리된 사무도 감사(조례 제6조 3항)

4. 監査資料 및 書類提出 (要求)

가. 감사자료제출

소관부서	요 구 자 료 명	비 고
<p>각실과 (공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산업건설위원회 질문사항 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 7월 이후 ~현재까지 ○ 2003 ~ 2004 주요사업비 집행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계. 국비. 도비. 군비), 추진상황 ※ 1건당 5천 만원 이상, 보조 자체사업 및 연구개발비 포함 ○ 2003 ~ 2004 감사원 및 정부종합감사, 자체감사 등 각종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기관, 지적사항, 조치사항, 행정상 조치(시정.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징계. 경고. 훈계) 	

소관부서	요 구 자 료 명	비 고
<p>각실과 (공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 ~ 2004 각종 기금관리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기금 설치현황 및 규모(목적, 설치근거, 기금 조성액, 사용목적, 기금조성방법, 2003, 2004년도 기금조성 목표액 대 조성액) - 각종 기금의 운용결산서(2003년) 및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서(각종 기금별로) - 각종 기금중 용자가 있는 경우 용자조건 및 용자실적 (2003, 2004) -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은행별 예치액, 이윤 - 각종 용자지원 기금중 용자기한이 지났으나 미 회수된 기금액 현황(각종 기금별) - 일반회계(특별회계 포함) 예산에서 각 기금에 출연한 현황(각종 기금별)(2003, 2004) ○ 2003~2004 각종 민원처리 현황(인·허가, 진정·건의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분, 접수일자(처리일자),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 각종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종류별, 사유별) - 각종 민원서류 처리 중 법령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준 건수(사유별) 및 사유 - 민원실무종합심의회 회의대상민원및 회의로 처리한 민원 - 불허, 취하 민원현황 및 내용과 사유 ○ 각종 위원회 최근 3년간 운영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명, 위원수, 개최실적, 심의내용, 심의내용의 사업 반영내역 ○ 2003~2004 행정심판 청구 및 재결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명, 청구인, 청구취지 및 이유, 재결결과, 재결 후 조치사항 ○ 2003이후 소송 현황(피소 . 제기사건, 행정 . 민사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명, 당사자(원고 피고), 관할법원, 청구취지 및 이유, 재판결과, 재판 후 조치사항 	

소관부서	요 구 자 료 명	비 고
각실과 (공통)	○ 용역사업 관련 - 각종 용역 의뢰 건명, 용역업체, 용역비, 용역계약 방법 (연구용역, 설계용역, 감리용역 구분) (2003, 2004) - 용역사업 중 사전에 기술심사를 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한 사례 (2003, 2004) - 각종 용역 사업 중 실제사업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사장하고 있는 용역현황(2003 ~ 2004) (구체적 사유 및 내용) - 각종 용역 사업 중 사업중단으로 용역을 적용시키지 못한 사례 (2003 ~ 2004)	
실과소별	별첨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 자료편철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직제순)

각 실·과·소별 공통사항을 먼저 편철하고 실과소별 요구
자료 순서대로 편철

나. 서류제출 : 감사기간 중 요구되는 서류

다. 현장확인 : 감사기간 중 요구되는 현장

- 월평지구대구획 경지 재정리 사업
- 수해복구공사 (가북, 신원면)
- 춘전~덕산 간 군도 확·포장사업

5. 證人 및 參考人 出席(要求)

- 공무원 : 본청 실·과·소장
 읍·면장 (읍·면장은 필요 시 출석요구)
- 기타증인 : 필요 시 출석요구
- 참고인 : 필요 시 출석요구

6. 監査進行

순서	내용	비고
선언·인사	○ 감사 선언 및 위원장 인사	위원장
선서	○ 감사대상기관의 부서장 선서	관계공무원
공무원소개	○ 실·과장이 담당주사 소개	실·과장
감사 실행	○ 감사 항목별 감사 (질의 답변) ○ 현장확인 및 관계인 증언	감사위원, 관계공무원
강평·종료	○ 감사종료 인사 및 감사종료 선언	위원장

7. 監査方法

-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증언하는 공무원이나 기타 증인은 반드시 증인선서 후 증언 (선서문 별첨, 참고인 제외)
- 감사는 감사대상기관(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당해부서의 제출된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위원의 신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
- 감사대상업무 분야별 신문은 해당부서장에게 신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신문은 1문 1답 방식으로 하며, 동일사안에 대해 질의 횟수 및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음 (위원회의 의결로 제한가능)
-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인이나 참고인의 요구, 또는 필요 시 위원회의 의결로써 비공개로 진행
- 감사중 추가적인 서류제출,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등은 위원회의 의결로 하며, 자진출석 및 제출의 형식으로 함
-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전체 또는 일부위원으로 확인반을 구성하여 현장확인 감사실시

8. 監査에 따른 留意事項

□ 감사의 한계

-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됨.

□ 제척과 회피

- 감사위원이 감사대상사무에 대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없음
- 위원회는 감사위원이 제척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감사위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수 있음

□ 주의의무

-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누설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됨

9. 監査實施結果 處理

- 감사결과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 채택
- 의장에게 보고 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
(감사결과 조치요구)

붙임 : 1. 선서문

2.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목록

선 서

본인은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2004년도 거창군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6월 일

선서인 소 속 :
 직 위 :
 성 명 :

2004

1		,	,	
2				
3		2003~2004		
4				
5				
6		,		
7		,	,	
8				
9		(2000~2004) 가 .		
10				
11		2000~2003		

2004

12	.	,		
13	가			
14		2003~2004 -		
15				
16		,	,	
17		,		
18	가	(2002~2003)		
19		(2001~2003)		
20				
21	가 .	가 , (2002~2003)		

2004

31				
32	가	가 (,) ,		
33	가			
34				
35	()	(2002~2003)		
36		2000~2004 () - , 가		
37		500 - ,		
38		(,) (,)		
39	1			
40	1			

2004

41		,		
42		2003		
43		(, , , ,)		
44	가	가		
45		()		
46				
47				
48				
49				
50				
51				

2004

52	가	,		
53		(2002~2003)		
54				
55		-		
56				
57				
58				
59				
60	가	가		
61				
62				

2004

63				
64		(, 가) () () ()		
65		() (2000~2004)		
66				
67				
68				